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규정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0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규정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규정
(안 제28조제2항 등)

개정안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u>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 . <후단 삭제>
1. <u>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u>	<삭 제>
2. <u>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u>	<삭 제>
3. <u>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u>	<삭 제>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경비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
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경비

④ 제2항에 따른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청년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
거관계경비

③ · ④ (생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생략)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u>청년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u> 4. <u>청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u> 5. <u>그 밖에 청년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u>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 ----- 4. <u>제28조제5항</u>----- ----- ----- ----- ----- 5. (현행과 같음)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 -----
--	---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 13. (생략) ② 제28조제4항·제42조제7항 또는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부터 제5항까지----- ----- 5. ~ 13.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6항-----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

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금액임.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으로 하여금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 이상을 각각 정책연구소, 시·도당, 여성정치발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배분·지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법률 제18838호, 2022. 2. 22. 공포)

또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법률 제19923호, 2024. 1. 2. 공포)

그런데, 현행법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명시한데 비해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

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정치발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의적인 보조금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구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여성정치발전	개정안에 따른 청년정치발전
1호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청년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호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 경비	청년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 경비
3호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청년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호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청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5호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그 밖에 청년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6호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청년추천보조금의 용도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는 청년추천보조금 제도의 개편내용으로 인한 정당의 보조금 집행 자율성 제약의 정도, 현재 상기 경상보조금이 주로 사용되는 항목 등을 고려하여 용도 열거 여부, 용도의 적

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율성과 청년 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